

## 공정위 「건설사 설계허용」의 오류

### Thoughts on the Fair Trade Commission's Permission of Architectural Planning by Construction Companies

이관영 /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by Lee Kwan-Young

이 글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축설계시장 진입규제완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설업체의 설계허용” 방침에 대해 필자가 건축사협회를 대표해 관계요소에 피력한 반대의견임을 밝힌다. <편집자 주>

#### 전문직(Profession)의 정의

지금까지 건축사(건축가)는 의사·변호사·회계사 등과 더불어 대표적인 전문직(Profession)으로 분류되어 왔으며, WTO 양허각서상의 분류에서도 건축분야가 전문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직은 장기간 교육과 훈련에 의하여 일반인이 도달할 수 없는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그 성실성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신뢰성을 인정하는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는 대신, 사회는 그 대가로써 각종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

- 사회가 전문직에 부여한 특권
  - 위신과 존엄성
  - 확고한 범위의 자치권과 권위
  - 높은 수준의 보수
  - 합리적 판단 능력의 인정
- Profession에 기대하는 의무
  - 실무수행에 대한 기준의 확립과 공정성 유지
  - 공공의 건강, 안전, 복지의 옹호
  - 개인의 이익에 앞선 공공의 복지와 이익존중

뿐만 아니라 Profession은 그 실무의 수행에 있어서도 Business가 아닌 Practice로 구별하고 단순한 이윤추구가 아닌 「자연인」으로서의 능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영어로 변호사나 개업의를 프랙티셔너(Practitioner)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뜻에서이다.

#### 건축생산방식의 다양함에 따른 Profession의 형태

구미 각국에서는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회사」가 이와같은 Profession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법으로 금해왔다. 그

것은 회사가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생각에서였다. 따라서 이제까지 쌓아온 사회와 Professional 사이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특수한 조건을 갖춘 Professional Corporation(직능법인, 전문법인, 약칭PC)을 제도화 하였다. PC의 조건으로는 개설자, 임원 및 주주를 Profession으로 한정하고 업무는 회사가 아닌 개인의 명의로 하여 수행하며 상호에는 개인 이름(또는 인명의 조합)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말미에는 필히 Profession Corporation임을 명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 취지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상호만으로도 회사의 성격과 취지를 알아 볼 수 있어 다른 「회사」와 혼동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공정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진입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 건축사만이 대표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문직 업무는 공공의 이익을 기초로 한 것으로 이를 전문직 이외의 개인 또는 법인이 전문직의 전문성을 사용하여 이익을 취할 수 없다. 또한 PL(Product Liability · 제조물 책임)에 대한 인식과 제도조차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축사의 업무에 제3자가 관련된다면 책임소재의 불확실, 교묘하고 지능적인 방법을 통한 책임의 전가·회피 등 막대한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또한 건축사가 피고용인으로 전락하므로써 고객 개개인에게는 물론 공공의 복지·안전에 초점을 둔 독립된 직능적 판단의 행사가 불가능해진다.

고용된 건축사는 그가 성실한 업무수행의 의무감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고용주와 고객간의 이익의 충돌(Conflict of Interest)에서 갈등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독립된 건축사에 비하여 직무에 대한 자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불가피한 이유로 전문직이 이익의 충돌에 개입하게 될 경우 고객에게 그 사실을 공표(De-clare) 또는 공개(Disclosure)하도록 하고 있어, 고객과의 신뢰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짐작케 하고 있다.

일반기업에서조차 전문경영인에 대한 오너의 지나친 간섭이 문제시되고 우리나라의 기업풍토에서는 고용건축사제도가 허용된다면, 한국의 건축문화는 비전문가의 손에 유린당하고 말 것이다.

## 건설사의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건설사를 중심으로 한 「규제완화」 요청의 이유를 보면 자사보유건축사(Inhouse-Architect)를 보유하므로써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 이는 조금만 주의하여 보면 논리의 허구성을 발견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 경쟁력 강화란, 턴키방식(Turn Key)이나 Design-Built방식에서 사내건축사를 활용하여 설계비용을 경감하고, 시간적으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논리인데, 실제로 세계시장에서 입찰사례를 보면 외국의 유명건설사 일수록 설계분야는 JV(Joint Venture)형식이나 기타 다른방식의 Out-Sourcing(외주)방식으로 입찰에 응하고 있다. 이와같은 방식을 채용하는 이유는 건물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설계경험을 한꺼번에 갖춘 Inhouse-Architect를 보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경쟁사와 경쟁을 위하여는 보다 유능하고 경험많은 설계자를 파트너로 하는 것이 경쟁심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사보유 설계조직을 갖는 것이 경쟁에 유리하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며, 이는 입찰에 실패하였을 경우에 설계비용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식의 지극히 소극적인 발상인 것이다.

그밖에 자사용도의 건물이나 자체개발사업의 설계 등에 있어서의 경쟁력문제도 진술한 바 건물의 용도와 종류에 따라, 경험을 통한 다양한 전문성이 요구되어 오히려 설계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감안할 때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비경제적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비록 자기가 사용할 건물이라고 하나 건축의 특성으로 보아 개인소유를 떠나 사회성을 고려할 때 불특정 다수인 이용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 다시말해 설계자에 의한 공공의 이익에 대한 존중이라는 대전제가 경시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 건설현장에서 축적된 신기술의 환류가 용이하다는 점에 대하여

시공에 관련한 신기술은 엄밀하게 말하면 Design이 아닌 Engineering에 관한 기술로써, 이 역시 성의만 가지면 설계단계에서 상호 정보교환이 가능하며, 또한 입찰단계 또는 시공단계에서 VE(Value Engineering 가치공학 : 최소의 비용으로 최상의 품질을 획득하기 위한 기법)제안을 통하여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이러한 VE 제안마저도 건축사의 엄중한 승인이 있어야만 채택할 수 있을 정도로 건축사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

## 설계사무소의 등록의무에 대하여

대한건축사협회는 비단 건축사들의 친목단체가 아니고, 법으로 위임받아 건축사의 관리, 평생교육, 업무기준의 정비, 행동강령의 제정 등을 통하여 건축사 업무의 성실성과 사회에의 공여를 보장하며, 건축사자격시험의 시행, 관련법규의 시달, 개선방안의 연구 등을 통하여 정부기관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대리하여 「유지관리」 하는 기관이다. 이 밖에도 WTO협정에 따른 회원국 상호간의 자격인증 등 중요한 문제들이 각국의 건축사관련 단체사이에 논의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건축사의 「협회등록」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 사무소 명칭에 대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건축사사무소의 업무의 특성을 쉽게 구별하기 위하여 현행제도는 매우 적절한 제도이다.

## 전문직의 진입규제는 독점이 아니다.

전문직에 대하여는 이미 「명칭의 독점」과 「업무의 독점」이 전통적으로 인정되어 왔다. 이는 전문직이 그 「독점」을 인정받기 위하여 「일반인이 도달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판단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며 그 「독점」을 일방적으로 향유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써 공익(Public Interest)을 우선한 실무를 행할 의무를 요구받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기구이며 불공정행위란 이러한 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제소가 있어야 할진대 전문직의 고유한 업무의 「독점」 때문에 과연 누가, 어떠한 형태의 피해를 호소해 왔단 말인가? 고작 자본가가 이러한 「전문직」을 고용하여 공공의 이익이 아닌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한 공익적인 제도가 불공정한 행위라고 하여서는 안되며, 이러한 자본가의 무차별 참여를 공정위가 거들어서는 더욱 명분이 없다.

잠시 부류가 되는 모양이지만 변호사, 회계사 등 17개 전문직에 대하여도 비슷한 논의가 있는 듯하다. 이게 웬말인가? 아무리 재벌이 김밥장사에 뛰어들고, 추석때면 조기, 명태를 사재기 하는 것이 우리나라 기업수준이라지만 이제 이런 작태에 공정위마저 「불감증」이 되었다 말인가?

돈만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안가리고 「진입」해서 「독점」하려는 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규제완화」의 본뜻이며, 공정위의 「공정한 입장」이란 말인가?

## 아직은 때가 아니다.

시대의 변화와 경제의 발전에 따라 고전적 전문직에 대한 고전적 인식의 변화 또한 당연하다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변화는 그 제도를 수용하는 사회적 환경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성숙하지 못한 환경에 주어진 「자유」가 자칫하면 제멋대로의 「방종」으로 변질되었듯이, 건축정책의 변화에는 우리나라 건축산업의 「성숙」과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PL(Product Liability : 제조물 책임)제도나 건축산업 관련 보험제도의 전무, 시공사의 「자주감리」에 대한 인식과 능력의 부족 등 건축산업의 선진화가 요원한 가운데, 거두절미한식의 제도개혁만 앞선다면 우리는 또한번 저 「불도저 시장」시대의 암울한 건축문화를 다시 체험하게 될지도 모른다.

온 국민을 분노에 떨게한 고속전철공사의 파행적 행태,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신국제공항 공사, 그칠줄 모르는 대형 사고, 비만으면 무너지는 아파트현장, 감사원까지 나서야 하는 지하철 부실사태 등 주위 어디에도 건설선진국이란 조짐은 없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우리의 건설환경이 「책임」과 「신뢰」를 기반으로 「선진화」한 다음에 「제도개혁」을 준비해도 늦지 않다. 그때까지 방관만 하지는 것은 아니다. 관련단체의 전문가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개선연구기구를 상설하여, 비단 차제에 거론되고 있는 「진입규제 문제」 뿐 아니라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광범위하고 신중한 연구를 통하여, 「졸속」의 어리석음을 뛰어넘어 진정한 한국건축의 장래를 도모해 보자고 제안한다.

세발자전거는 느리지만 넘어지지는 않는다.

선불리 두발자전거로 바꾸면 탄 사람 뿐아니라 지나가던 사람까지 함께 다치게 되는 것이다. 착실히 연습을 해서 위태하지 않을 때, 그 때 두발자전거를 사주어도 좋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이다.